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호서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호서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산업체등으로부터 산업자문을 통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 구성)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별지 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에 신청하거나, 산업교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문을 수행한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별지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10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5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신청시 산업체등과 산학협력단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0%를, 산학협력단에 2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2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